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2
------	-----

2015. 6. 29.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1일, 김현아의원의 11인

나. 회부일자 : 2015년 4월 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5.6.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현아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

- 안 제9조 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9조 제3항), 시장이 시의원, 사회적경제 업무 및 예산

담당 과장,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함(안 제9조 제5항)

- 그 외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제6항), 위원의 임기(안 제9조 제7항), 해촉사유(안 제9조 제8항), 회의 개최 및 정족수(안 제9조 제9항), 간사(안 제9조 제6항) 등의 규정이 있음.

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 위원회 현황

- 사회적경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용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희망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1)에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

반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제시가 있음.

라. 종합의견

-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²⁾,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제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며, 모든 발의안에서 시·도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안 제9조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5추48 판결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표-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시·도 위원회 관련 규정

<p>유승민의원 발의안</p>	<p>제12조(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신계륜의원 발의안</p>	<p>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p> <p>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p>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p>

	<p>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p> <p>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p> <p>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 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p>
<p>박원석 의원 발의안</p>	<p>제15조(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마련하여 확정하거나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도 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지역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하도록 한다.</p> <p>④ 그 외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다.</p>

-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신설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희망경제위원회가 행정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경제진흥본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서울시의 경제정책을 총망라하는 최고자문기구로 설치된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반면에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독립된 위원회의 신설도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며, 경제진흥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인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 제5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2
----------	--------

제안년월일 : 2015년 6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며, 경제진흥본부장이 부위원장이 되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인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안 제9조 제5항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회의 위원 중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함(안 제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제2호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을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5항제3호 ‘시의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을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희망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p> <p>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p> <p>①~④(개정안과 같음)</p>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
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 예산담당 업무
담당 과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
----- 국장

3.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5.(개정안과 같음).

⑥~⑪(개정안과 같음)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닐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부터 제23조를 제11조부터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회적경제 정책 심의·조정)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희망경제 위원회에 상정한다.</p>	<p>제9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이 된다.</p> <p>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3.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4.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p>한다.</p> <p>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p> <p>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제10조 ~ 제23조 (생략)	제11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